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4
----------	-----------

제안년월일 : 1998년 10월 14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일부 부과항목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있어서 3호 나목의2중 과태료 부과대상 식품접객업소의 범위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으로 함.(별표1)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부과항목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3호 나목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150	200

수정안대비표

원			개			정			수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생략>가~나.<생략>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체에 대한 조치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5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원안과같음>가~나.<원안과같음>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체에 대한 조치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150	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개정안과같음>가~나.<개정안과같음>나의2	100	150	200